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19

발의연월일: 2021. 6. 2.

발 의 자:김영식・태영호・박성중

최형두・윤한홍・서일준

김정재 · 정경희 · 이원욱

박성민 · 임이자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 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 보호 업무 및 자료제출의무 등을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각각 지사를 두고 있는 구글, 애플 등의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8제2항).

법률 제 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8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둔 경우
- 2.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지배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제104조제3항제1호의3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의8제2항후단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②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u>한다.</u>
<u><신 설></u>	1.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법인
	<u>을 둔 경우</u>
<u><신 설></u>	2.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자
	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는 법인이 있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4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0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3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의2. (생 략)	1. •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	1의3

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u>아</u> <u>니한 자</u>

 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

 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2. • 3. (생략)

④ ~ ⑥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